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165 발의연월일: 2022. 11. 8.

발 의 자:김성환 의원

찬 성 자: 강득구·강민정·강병원

강선우・강준현・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김수흥・김승남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김원이 • 김윤덕 • 김의겸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김철민 · 김태년 · 김한규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박병석 • 박상혁 • 박성준

박영순 • 박용진 • 박재호

박 정・박주민・박찬대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서영석・설 훈・소병철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유건영 • 유관석 • 유영덕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이수진・아수진비・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이워택 • 이인영 • 이장섭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조오섭·조승천·조정식 주철현·진선미·진성준 천준호·최강욱·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68인)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지급하도록함(안 제3조의6제1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
- 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의6제2항).
- 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조 정·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을 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30조).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을 "내용,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연동 및 제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작성)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목적물등의 명칭
- 2. 대상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 3. 연동요건(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한다)
- 4.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5. 연동주기, 연동일 및 반영시점
- 6.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하도급대금 연

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과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0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한다.

⑨ 원사업자는 제3조의6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 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를 "제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4, 제4조부터"를 "제3조의4, 제3조의6, 제4조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 ① (생략) 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 내용,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 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 급대금 연동 및 제16조의2제1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 항-----자서명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9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의 작성)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 업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주 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 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등의 명칭

-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생략)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 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

- 2. 대상 원재료 및 원재료 가격기준 지표
- 3. 연동요건(원재료 가격 변동 률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한 다)
- 4.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및 비교시점
- 5. 연동주기, 연동일 및 반영시 점
- 6.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하도급대 금 연동계약서 작성과 제정 또 는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현 행과 같음)

(3)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저 ~ ⑧ (생 략) <신 설>

<u>⑨</u>·<u>⑩</u> (생 략)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 </u>
제11항
]] 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원사업자는 제3조의6 하도
급대금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
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
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u>한다.</u>
<u>⑩·⑪</u>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
①레11항

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 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 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 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 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1. • 2. (생략)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저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략)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 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 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

<u>제11항</u>
<u>제11항</u>
1.・2. (현행과 같음)
세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
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
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
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게 10하 게 1
<u>제10항</u> <u>제1</u>
1항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u>제13조제12항</u>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13조제12항-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 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 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 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 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 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 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세25조(시정조치) ①
<u>제</u> 9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4조부터
 ② ② (청레리 기호)
②・③ (현행과 같음)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u>제3조의4, 제4조부</u> <u>터</u>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 한 자
 - 2. ~ 4. (생략)
 - ②·③ (생 략)

제30조(벌칙) ①
,
1
, <u>제</u> 3조의4, 제3조의6,
제4조부터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혀해과 간음)